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어촌도로 기존 점용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점용허가신청서 상에 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6호서식(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2021. 7. 12. ~ 8. 23.)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신규·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일시점용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 (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구분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		
	점용의 기간		
	공작물(시설)의 구조		
	공사실시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기타 특이사항(변경 신청의 경우 당초 허가번호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설계서 1부(점용의 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종질지(80g/㎡)]